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경대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4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9. 9.

발의자 : 경대수 · 이종명 · 이명수

김성찬 · 김종석 · 이종배

정태옥 · 문진국 · 이철우

김정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안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 그런데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의 개정으로 「농업정책보험금융원」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.

따라서 위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을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설립된 「농업정책보험금융원」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, 「농업정책보험금융원」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3항, 제24조제2항, 제25조의2 제2항).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를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63조의2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(이하 “농업정책보험금융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를 “농업정책보험금융원”으로 한다.

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를 “농업정책보험금융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재보험사업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</u>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20조(재보험사업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63조의2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(이하 “농업정책보험금융원”이라 한다)-----.</p>
<p>제2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생략)</p> <p>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</u>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농업정책보험금융원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5조의2(농업 재해보험사업의 관리) ① (생략)</p> <p>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</u>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25조의2(농업 재해보험사업의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농업정책보험금융원 -----.</p>

1. ~ 4. (생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